

#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162
----------	---------

제안년월일 : 2025년 12월 18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지원’ 을 정의 규정에 신설하지 않고 현행 제2조의 ‘혁신기술’ 의 정의에 클라우드 컴퓨팅기술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며,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현행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 기술’ 의 별도 정의 신설은 삭제하고, 현행 ‘혁신기술’ 의 정의에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포함하도록 수정함(안 제2조).
-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지원’ 신설 조항을 삭제함(안 제16조제1항 제4호).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을 현행 ‘위원 중 호선’ 방식 으로 유지함(안 제7조제2항).

##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제1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혁신기술"이란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기술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p> <p>가. ~ 라.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마. (생략)</p> <p>3. ~ 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제7조(창업 및 기술지원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과 혁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4. (생략)</p> <p>② (생략)</p> <p>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p> <p>가. ~ 라.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마. (현행과 같음)</p> <p>3. ~ 4. (현행과 같음)</p> <p>5. "4차 산업혁명 기술"이란 제1호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포함한다.</p> <p>제16조(창업 및 기술지원 등) 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지원</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회 구성) ① ----- ----- 부위원장 1명-----</p>	<p>제2조(정의) ----- -----.</p> <p>1. (개정안과 같음)</p> <p>2. ----- ----- ----- -----.</p> <p>가. ~ 라. (생략)</p> <p>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p> <p>바. (개정안의 마목과 같음)</p> <p>3. ~ 4.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u>&lt;삭제&gt;</u></p> <p>제16조(창업 및 기술지원 등) ① ----- ----- ----- ----- -----.</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u>&lt;삭제&gt;</u></p> <p>4. (개정안의 제5호와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7조(위원회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u>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u></p> <p>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u>중에</u> 호선한다.</p> <p>④ (생략)</p>	<p>-----.</p> <p>② <u>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③ ----- 중에서 -----.</p> <p>④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u></p> <p>③·④ (개정안과 같음)</p>

##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제10조를 제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위원장”을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  
에”를 “중에서”로 하며, 제11조를 제7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등)”을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된”을 “위촉한”으로,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새로  
이 시작한다”로 하며, 제12조를 제8조로 한다.

제13조를 제9조로 하고, 제14조의 제목 중 “(위원회 운영)”을 “(위원장의 직무)”로 하며, 제3항부터 제7항을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하고, 제15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7조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하며, 제17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혁신기술"이란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기술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p> <p>가. ~ 라.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    마. (생 략)</p> <p>제6조 ~ 제9조 (생 략)</p> <p>제10조(4차 산업혁명위원회) ① · ② (생 략)</p> <p>③ <u>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    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기술</p> <p>    바. (현행 마목과 같음)</p> <p>제15조 ~ 제18조 (현행 제6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p> <p>제6조(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  
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생략)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생략)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생  
략)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  
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위원회 운영) ①·② (생  
략)

③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  
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 부위원장 1명-----

-----

② (현행과 같음)

③ ----- 중에서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  
음)

② ----- 위촉한 --  
----- 새로이 시작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② (현  
행과 같음)

<삭제>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제12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3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 (생략)

제19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증사업과 경진대회,

제20조(사무의 위탁) -----  
-----  
-----

관계기관의 지정·운영 등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 제20조 (생략)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일부-----  
-----  
-----  
-----.

제21조 ~ 제23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삭 제>